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
-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

3. 주요내용

- 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로, 격려 지급근거 신설(안 제5조 제10항)
- 보훈 예우수당 지급 시기 변경(안 제10조 제3항)
-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범위 안에서 보훈관련 기념일·행사와 설·추석 명절 등에 지급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 보훈 예우 수당 지급 시기를 매 분기말에서 매 월말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